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63

발의연월일: 2020. 9. 25.

발 의 자:최형두·김수흥·서병수

박대출 · 김성원 · 박수영

서범수 · 김정호 · 이달곤

윤한홍 • 권명호 • 구자근

권영세 · 양향자 · 박완수

김태호 · 정점식 · 하영제

김한정 · 김기현 · 배현진

박성민 · 김미애 · 전해철

전용기 · 윤영석 · 강기윤

이명수 · 서영교 · 설 훈

의원(30명)

제안이유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독재정부의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에기여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서 4·19혁명의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19혁명이나 5·1 8민주화운동 등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왔음.

특히, 2010년도에 4·19혁명 기념일과 별개로 3·15의거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15의거가 4·19혁명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어 법적으로 독립적인 의거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로서 진정한 역사적·국가 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한국 민주화운동의 시초인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 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3·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함(안 제2조제1호).
- 나. 3·15의거의 진상규명, 관련자 및 유족 여부의 결정, 그 밖에 명예 회복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3·15의거 진상규명 및 관련 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 다. 관련자 중 3·15의거와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라. 정부는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8조).
- 마. 정부는 3·15의거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음(안 제19조).

바. 3·15의거와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차감 지급함(안 제36조).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3·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주의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3·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우동을 말한다.
-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에 따른 3·15의거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
 - 가. 3 · 15의거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 나. 3·15의거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 다. 3·15의거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라. 3 · 15의거와 관련하여 수배 · 연행 또는 구금된 자
 - 마. 3·15의거와 관련하여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 바. 3·15의거와 관련하여 집회, 시위, 조직 활동 등에 주도적 역 할을 한 자
- 3. "관계기관등"이란 3·15의거와 관련하여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그 밖의 관계 기관, 시설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 ②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 제4조(3·15의거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3·15의거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3 · 15의거 진상규명
 - 2.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 결정
 - 3. 관련자 중 상이를 입은 자의 장해등급 판정
 - 4.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 6.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7. 기념시설 조성 등 관련자 추모사업 지원
- 8. 그 밖에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및 3·15의거 관련 단체가 추천한 각 1명씩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3·15의거 진상규명기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3·15의거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를 위하여 경상남도 등에 신고처를 개설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관련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에 관하여

-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 2.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 3.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 관계기관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 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 4. 관계기관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 6. 현장조사
- 제9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8조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 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

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 관이 집행한다.
-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 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제1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 등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한하여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

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6조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15의거 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진상조사보고서에는 관련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완료 후 관보에 게재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3·15의거 참여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참여자에게 사전에 관련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에 3·15의거 참여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특별재심) ① 관련자 중 3·15의거와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 ③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 판결을 하여야 한다.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재심청구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 제14조(관련자증서의 교부 등) ① 위원회는 관련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관련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3·15의거와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5조(복직의 권고) 위원회는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 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6조(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위원회는 관련자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에 관련자의 3·15의거와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 제17조(불이익 처우금지)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으로부터 3·15의거에 관련하였다는

-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18조(기념사업) 정부는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 하여야 한다.
- 제19조(3·15의거 관련 재단지원 등) ① 정부는 3·15의거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있다.
 -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재단의 운영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그 밖에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 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관련자 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 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관련자 보상) ①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
- 제23조(보상의 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 제24조(보상금)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 1. 3·15의거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 2. 3·15의거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 ② 3·15의거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라보상금을 지급한다.
- ③ 제1항의 월급액·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르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보상금의 조정·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다.
- 제26조(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유 쪽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3·15의거를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 2. 3·15의거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그 정도가 경미하여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자

- 3. 3 · 15의거를 이유로 해직된 자로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의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기탁금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의료지원금) ① 3·15의거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보호 또는 보장구(保障具)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 ③ 3·15의거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본인이부담한 치료·보호 및 보장구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 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29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 제30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1조(재심의) ① 제29조 본문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30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 다.
- 제3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제30조에 따른 결정서정 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 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 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34조(조세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35조(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제30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 제3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등) ① 3·15의거와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인이 제32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3·15의거와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를 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37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 2. 잘못 지급된 경우
 - 3. 3·15의거와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가 생존하고 있거 나 3·15의거와 관련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 우
 -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때른다.
- 제38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 제39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③ 제21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0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전에 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